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1.(월) 12:00 / 10. 21.(화) 조간 배포 2024. 10. 21.(월) 09:00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에 손잡는다

- 농식품부-환경부, 가축·야생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
2.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업무협약 개요

□ 목적

○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21(월) 16:00~16:30 / 농식품부 재난대응 상황실

○ 참석자

- 농식품부 : 방역정책국장, 구제역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등
- 환경부 : 자연보전국장,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등

○ 내용 : 가축·야생동물 질병 대응업무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00~16:05	· 행사 일정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	* 농식품부 사무관
16:05~16:10	· MOU 개요 설명	* 농식품부 사무관
16:10~16:13 (3')	· 인사말씀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16:13~16:16 (3')	· 인사말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16:16~16:30 (14')	·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력 MOU 체결 및 기념촬영	* 촬영 : 대변인실

붙임 2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의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부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양 부처 보유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에 협력한다.
2.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공동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백신 개발과 상용화에 공동 협력한다.
3. 가축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예찰에 상호 협조하고 수집된 예찰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4. 이외 양 부처에서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실무협의) 각 항목별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 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양 부처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6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최 정 록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환 경 부 자 연 보 전 국 장
김 태 오

붙임 3 농식품부 · 환경부 협업 방안 세부 사항

□ 야생멧돼지와 양돈농장 ASF 정보의 부처간 공유

○ 야생멧돼지 ASF 양성·음성정보 공유, 야생멧돼지와 양돈농장 간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유전형 정보 상호 공유

○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의 병원성 변이 추적조사를 위한 중·대동물 실험실 공동 사용

□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 고라니에 대한 가성우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정보와 해당 농장 주변 야생동물 질병 예찰 계획을 연계하여 질병 확산 예방

□ 양돈농장 ASF 발생시 공동 역학조사

○ 양돈농장 ASF 발생시 부처 합동 농장 내·외부 조사를 통한 역학관계 규명 효율화(필요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동향 정보 공유

○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 공유, 백신 상용화를 위한 등록·허가 절차 협력

□ 예찰 정보 공유

○ 야생동물 예찰에 상호 협조하고 양 부처는 수집된 예찰 정보에 대해 적극 공유